

자료 26. 통폐합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 재판 및 관련
자료

헌재 “경원대 통폐합,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입력 2012.08.05 (10:24) 단신뉴스 | VIEW 4



댓글0

> 공감뉴스에 자동 저장됩니다." onclick="addRecommend('2514671');" type="button">공감0

헌법재판소는 경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경원대와 가천의대의 통폐합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통폐합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이 법원에서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됐으며,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원대 학생들은 지난해 7월 교과부가 경원대와 가천의대를 통폐합하며 명칭을 가천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리자,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헌재 “경원대 통폐합, 헌법소원 대상 아니다”
- 입력 2012.08.05 (10:24)

단신뉴스

헌법재판소는 경원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이 경원대와 가천의대의 통폐합은 위법하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통폐합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이 법원에서 이미 원고 패소로 확정됐으며, 법원 판결은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원대 학생들은 지난해 7월 교과부가 경원대와 가천의대를 통폐합하며 명칭을 가천대로 변경하는 처분을 내리자, 교육받을 권리와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 김희용 기자
- emaninny@kbs.co.kr



서울 행정 법 원

정본입니다.

제 1 1 부

2012. 4. 13.

법원주사보 추 인



판 결

사 건 2011구합33679 대학교풍폐합승인치분취소

원 고 1. 경원대학교총동문회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

대표자 조규호

2. 조규호 (630518-1168415)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삼부아파트 108동 901호

3. 김미라 (731024-2245419)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503동 1401호

4. 박찬웅 (671201-1068225)

군포시 산본동 1124 대우빌 1307호

5. 고낙준 (860808-1168618)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2338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현용

피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법률

담당변호사 김종인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가천학원
 성남시 수정구 곡정동 산65
 대표자 이사장 김신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완식, 김선태, 김진영

 변 론 종 결 2012. 3. 21.
 판 결 선 고 2012. 4. 6.

주 문

1. 원고 경원대학교총동문회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조규호, 김미라, 박찬용, 고낙준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7. 1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 통·
 폐합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경원대학교총동문회의(이하 '원고 동문회'라 한다)는 경원대학교 졸업생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그 구성원 간의 친목과 경원대학교의 발전 등을 도모하는 단체이고,





원고 조규호, 김미라는 경원대학교 졸업생이며, 원고 박찬웅, 고낙준은 경원대학교 재학생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1. 4. 29. 피고에게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 통·폐합 승인을 신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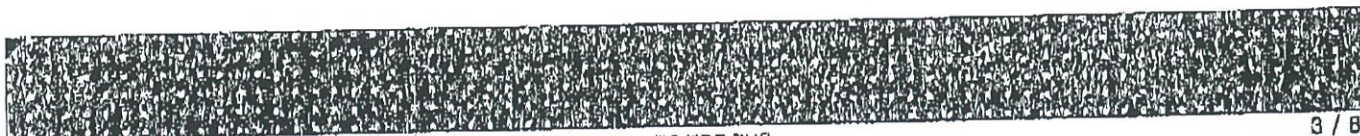
다. 피고는 2011. 7. 11. 참가인에 대하여 "통·폐합 후 대학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한다. 통·폐합 후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소재지는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로, 가천대학교 인천캠퍼스 소재지는 인천 연수구 함박외로 191로 한다. 통·폐합 연월일은 2012. 3. 1.로 한다. 통·폐합 후 2012년도 입학정원은 학부 3,984명(야간 182명)로 한다"는 내용의 통·폐합 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에 "참가인은 2012. 2.말 전까지 정관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폐합 승인의 취소 또는 학생정원의 감축 등 행정적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승인조건이 부가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교명이 변경되어 원고들의 행복추구권, 경원대학교 동문으로 살아 갈 권리와 원고 박찬웅, 고낙준의 경원대학교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에 대하여, 피고와 참가인은 학교의 명칭변경으로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은 사실적·간접적인 불이익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들의 주장취지는 이 사건 처분에 법률상 근거가 없는 교명변경에 관한 사항





이 포함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인 점,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인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대학설립 운영규정,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에 의하면, 통·폐합 신청 대학은 폐지되는 대학의 재학생 및 졸업생의 보호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동 고시 제5조, 제6조), 폐지되는 대학의 총동문회의 보호대책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 동문회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경원대학교 졸업생이거나 재학생인 나머지 원고들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동문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와 참가인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동문회를 제외한 원고들(이하 '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의 주장

- (1) 이 사건 처분에 교명변경을 포함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다.
- (2)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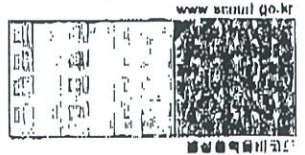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 (1) 첫 번째 주장에 관하여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항, 제18조 제1항, 동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2호, 제5항, 사립학교법 제16조 제1항 제2호, 제45조에 의하면, 사립학교의 명



청 변경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정수 중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의사결정을 거쳐 정관을 변경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정관변경인가를 받는 절차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갑 제2호증, 을나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의 이사회는 2011. 12. 26. 이사정수 13인 중 12인의 찬성으로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의결한 후 2012. 1. 30. 피고로부터 그 인가를 받은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은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의 통·폐합을 승인하되 교명변경을 위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 그 인가를 받을 것을 명하는 부판이 부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는 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조건이나 기한, 부담 등의 부판을 붙일 수 있는바(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두9829 판결), 앞서 본 대학교 통·폐합승인처분의 근거규정의 취지 및 문언 등에 비추어 대학교 통·폐합승인 처분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신청인의 적격성, 해당 대학교의 구조개혁 필요성 등을 참작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라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하여

대학교 통·폐합이나 교명변경 관련규정에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의견수렴절차 정유 여부는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니, 나머지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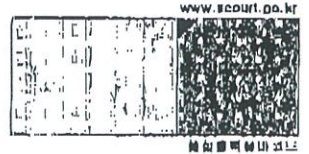
그렇다면 원고 동문회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





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준필	_____
	판사	이승훈	_____
	판사	이창은	_____



관계법령

고등교육법(2011. 7. 21. 법률 제108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학교의 설립등)

③ 공·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학교의 명칭)

① 학교의 명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2012. 3. 2. 대통령령 제23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학교설립 등)

②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사이버대학의 설립인가절차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명칭

⑤ 법 제4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학교의 설립·경영자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10호의 사항을 말한다.

사립학교법

제16조(이사회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45조(정관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사립대학 통·폐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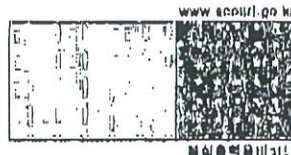
제2조(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 연차별 교원확보율은 통·폐합 시기 이후부터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교지·교사의 확보율 기준) ① 교지·교사의 확보율은 통·폐합 심사일 현재 교지·교사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토지 매매계약 체결, 건축허가 취득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경우는 심사를 통해 인정할 수 있다.

② 통·폐합 승인시 교지·교사의 추가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교사 확보율 산정 기준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2조의3제3항을 따르되,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제4항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④ 교지가 분리된 경우 교지·교사의 확보율은 교지별모 롱·폐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롱합 후 존치하는 대학을 기준으로 개선 여부를 판단한다.

⑤ 교지·교사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4조(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기준) ①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은 롱·폐합 심사일 현재 수익용기본재산 확보가액을 반영한다.

② 수익용기본재산의 확보율 개선 여부는 편제완성연도까지 확인한다.

제5조(폐지되는 대학의 학사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① 재학생 보호를 위하여 폐지되는 대학의 학칙은 롱·폐합 직전 연도에 입학하여 휴학한 학생이 입학 당시의 학칙을 적용하여 졸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학연한 이상의 기간 동안 존치하여야 한다.

② 폐지되는 대학의 학칙 존치기간 이후의 복학생, 졸업생의 편입학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다.

③ 폐지되는 대학의 교직원의 임면은 롱·폐합 시기 이전까지는 기존 대학 소속으로 임용하도록 하되, 임용에 관한 절차나 방법은 임용권자가 정하며, 폐지되는 대학의 장은 롱·폐합 시기부터 폐지되는 것으로 처리하되 임기만료로 본다.

④ 롱·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대학의 교비회계 등 회계 일체는 폐지·침산하지 않으며, 롱합 후 존치하는 대학에서 승계하여 관리·운영한다.

⑤ 롱·폐합 이후 존치하는 대학의 장은 폐지된 대학 재학생의 학적관리 등 학사 행정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⑥ 롱·폐합 신청 후 승인시까지의 수시모집을 할 수 없다.

제6조(학생 및 교직원 보호 대책에 관한 사항) ① 롱·폐합 신청 대학은 롱·폐합 신청서 제출 시 휴학생, 복학생 등의 학습권 보호 대책과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의 신분 보장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롱·폐합 신청 대학은 롱·폐합 신청서 제출 시 폐지되는 대학의 학생들이 장학금, 취업 지원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특성화 계획 수립 등) 롱·폐합 신청 대학은 대학의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롱·폐합 심의시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포함하여 심사한다.

제8조(롱·폐합 신청의 제한) 롱·폐합을 신청하는 대학의 일방 또는 양 대학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롱·폐합 신청을 제한한다.

1. 감사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감사 결과에 의한 시정요구 사항 중 롱·폐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이행 또는 시정하지 못한 대학

2. 대학설립 인가기준과 관련하여 행정상·재정상 제재를 받고 동 제재 내용을 해소하지 못한 대학

3.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제9조(관련 법령의 개정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에 의해 관련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른다.

제10조(롱·폐합의 심의) 사립대학 롱·폐합은 대학설립·운영규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준 비 서 면

사 건 2011구합33679 대학교통폐합승인처분취소

원 고 경원대학교총동문회 외 4

피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원고적격에 대하여

피고와 피고의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침해 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 경원대학교총동문회는 경원대학교를 수료한 자들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경원대학교의 존립을 전제로 하고 있고, 위 원고의 구성과 운영은 피고 보조참가인인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및 위 학원이 설치·운영하는 경원대학교와 필수적인 협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칭 역시도 필수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명칭, 구성과 운영에 있어 피고 보조참가인 및 경원대학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위 원고로서는 피고의 일방적인 교명 변경 처분으로 인하여 피고 보조참가인과 사이의 동문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계약상 또는 신의칙상 개별적이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이익이 침해되었고, 이러한 이익

은 법률 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한다할 것입니다.

한편, 원고 조규호와 김미라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설치·운영하는 경원대학교를 수료한 자이자 원고 경원대학교총동문회 구성원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 경원대학교총동문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상 이익이 있고, 특히, 피고 보조참가인과의 재학계약에 의하여 수료 후 ‘경원대학교’의 수료자 또는 ‘경원대학교’총동문회 구성원으로 보호를 받고 이익을 향유할 법률적 이익이 있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학생인 원고 박찬웅, 고낙준은 역시 재학계약에 의해 ‘경원대학교’라는 명칭에 대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상태입니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재학계약에는 교육의 목적을 일탈하거나 일반사회관념 상 확정되는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한 교수들의 지도와 대학행정당국의 행정 조치를 학생들이 따르기로 하는 약정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약정의 범위 내에 교명 변경도 포함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용한 하급심 판결은 캠퍼스의 일부 이전에 대한 것으로서 교명 변경과는 관련이 없고, 상황도 매우 다르며, 행정처분과 관련된 것도 아닌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에 원용할 수도 없고, 특히 원고적격과는 무관합니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처분에 교명 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가천대학교로의 교명 변경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근거가 없고, 피고 보조참가인의 정관에 위반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들은 가천대학교로의 교명 변경에 관여할 이유도 없고, 관여한 사실도 없으며, 승인 사항도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 역시 이 사건 처분에는 가천대학교로의 교명 변경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취소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이 사건 처분(갑 제1호증)을 살펴보면,

‘승인사항

가. 통.폐합 후 대학의 명칭 : 가천대학교

나. 통.폐합 후 대학의 위치

- 가천대학교 경원캠퍼스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산65

- 가천대학교 인천캠퍼스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함박피로 191’

등으로 명백하게 교명 변경에 대한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교명 변경에 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1. 8. 경부터 학교 홈페이지, 입학생 모집, 각종 언론에의 광고, 문서 작성 등 모든 업무에 ‘가천대학교’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서울과 성남시 등 주변 도시들의 도로안내판 역시 모두 ‘가천대학교’로 명칭을 바꾼 지 오래됩니다. 즉, 모든 법률상, 사실상의 행위에 ‘가천대학교’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난 재판 기일 때도 그 문제점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피고나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에 교명 변경 내용이 없다는 사실과 다른 황당한 주장만 할 뿐이었습니다.

위와 같은 실질과 다른 주장과 행동으로 인해 원고들을 포함한 경원대학교 재학생, 졸업생, 동문회 구성원들, 2012년도 입학지원자들, 지역 주민들 등 모두가 큰 혼란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처분에서 교명 변경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위법하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대하여는 이익으로 원용하나, 그렇다면 이를 즉시 시정하여 더 이상의 혼란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교명 변경에 관한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 및 다양한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쳤다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은 교명 변경을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 정관 변경, 피고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교명 변경에 대한 이러한 절차를 거친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지난 재판 기일에서 피고 보조참가인도 인정하였듯이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므로 그에 따르더라도 아직 교명 변경 절차는 전혀 이행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물론 위와 같은 절차 외에도 교명 변경은 원고들의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재학계약 등과 관련이 있으므로 원고들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통.폐합의 찬반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 대하여만 설명하면서 교수진, 직원, 재학생, 동문, 이사회 등으로부터 동의나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

합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와 같은 동의나 승인이 '가천대학교'로의 교명 변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 제3, 4호증의 각 1, 2에서 엿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가천대학교'로의 교명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나 승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보조참가인이 위와 같은 증거로 제시하는 을나 제2호증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이고, 이마저도 최초의 신청서가 아닌 최종본으로서 그 과정에서 피고의 요구 등에 의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 임의로 여러 가지 수정을 했던 것이며, 동의나 승인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구체적인 자료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이 제시한 2011. 4. 28.자 이사회 회의록(을나 제4호증)에 따르면, 교명 변경에 대하여 당시 찬반의견이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나 제2호증만으로는 통.폐합은 물론이고 교명 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나 승인이 있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동의서나 확인서 등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4. 원고들은 피고 및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아래의 문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주장과 관련하여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을나 제2호증 제87, 98, 98쪽 관련 교수 동의서 등, 제88, 98, 99쪽 관련 직원 동의서 등, 제92쪽 관련 재학생 동의서 등, 제91쪽 관련 동문 동의서 등의 구체적인 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피고 보조참가인의 2011. 12. 20.자 준비서면 14 내지 17쪽 주장 관련 문서들입니다.

한편, 을나 제2호증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주장하듯이 신청서 중 최종본입니다. 이는 최초의 신청서를 여러 차례 변경한 것으로서 교명 변경이나 이에 대한 이해관

계자들의 동의 여부에 대한 부분에 있어 그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최초의 신청서 등과 대조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 피고 및 피고 보조참가인은 보관하고 있는 최초의 신청서 등 교명 변경과 관련된 신청서 일체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결 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한편, 교명 변경과 관련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2012. 1. .

위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이 현 용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 귀중

준 비 서 면

사 건 2011구합33679 대학교통폐합승인처분취소
원 고 경원대학교총동문회 외 4명
피 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가천학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합니다)의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교명변경과 관련한 정관변경 및 피고의 인가

가. 고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제4조 제3항, 동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2조 제2항 제2호, 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45조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결의(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 → 정관 변경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경원대학교와 가천의과학대학교의 통폐합은 어느 한 대학교가 다른 대학교를 흡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에서 통합을

하여 하나의 대학교를 설립하는 것이므로, 종전 각 대학교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참가인은 이 사건 통폐합신청을 하기 전 통폐합에 대한 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변경될 교명에 대한 의견도 함께 수렴하였고, 이후 참가인의 이사회 최종의결을 거쳐 통폐합 후 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임시 지정(예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가인은 추후 정관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으로 교명변경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 역시 이 사건 통폐합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2012년 2월말 이전까지 학교법인 가천경원학원 정관변경 인가를 득할 것'을 승인조건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갑 제1호증 중 제2쪽 2. 라항).

나. 이에 참가인은 2011. 12. 26. 이사회를 개최하여 통폐합된 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로 하는 정관변경에 대하여 심의하였고, 이사정수 총 13명 중 12명의 참석,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을나 제6호증).

그 이후 참가인은 정관변경 인가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구비하여 피고에게 정관변경 인가신청을 하였고, 2012. 1. 30. 피고로부터 정관변경 인가를 받았습니다(을나 제7호증)¹⁾.

1) 을나 제6호증에 첨부된 정관변경 신규문 대조표와 피고의 정관변경인가 내용을 비교하였을 때, 정관변경인가 내용 중 제7장 제2절 이하에서는 제2절 제목이 '가천대학교'로 변경되었을 뿐 그 이후의 직제 관련 규정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습니다. 이는 정관으로 정하는 학교법인 및 학교의 사무기구와 정원에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면 되기 때문에(즉 보고사항입니다; 사립학교법 제45조 단서), 변경된 직제 부분을 위 인가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입니다.

2. 교명변경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수렴

가. 앞서 언급하였듯이 교명변경은 이사회 결의, 정관변경, 피고의 인가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참가인이 더 나아가 재직 교수, 직원, 동문, 재학생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나 또는 의견을 수렴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동의 내지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교명변경 절차의 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참가인은 대학교 통폐합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학교법인 및 대학 관계자(교수, 직원, 재학생,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2011. 12. 20.자 준비서면에서 상세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통폐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에 있어 통폐합 후 대학교의 명칭에 대하여도 함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나. 원고들은 갑 제3, 4호증을 근거로 참가인이 교명변경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을나 제4호증을 보면 교명변경에 대하여 찬반의견이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1) 그러나 갑 제3호증의 1(성명서)은 성남시장인 이재명, 갑 제3호증의 2(기자회견문)는 성남지역 내 시민단체들 명의로 각각 작성된 것으로서, 이들은 교명변경 등에 대하여 아무런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갑 제4호증의 1(신문기사)은 위 성남지역 내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한 신문기사, 갑 제4호증의 2(신문기사)는 경원대학교 9대 총동문회(회장 조규호)와 학생대책위원회가 교명 변경에 반대한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하였다는 신문기사로서, 이는 교명 변경에 반대하는 일부 의견이 있다는 것 외에 참가인이 교명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2) 다음으로 을나 제4호증(이사회 회의록)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참가인은 2011. 4. 28. 이사회를 개최하여 가천의과학대학교와 경원대학교 통합안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하였습니다.

위 2011. 4. 28.자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대학에서 교명확정시 4개안²⁾을 가지고 택일한 것인지와 교명확정 절차에 대한 질의에 관하여 참가인의 기획처장은 “4개안을 중심으로 교직원들의 동의를 거쳐 대학에서 1차 선정하였으며 교명확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이사회에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4개안 이외에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관하여 참가인의 기획처장은 “따로 없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교명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설명을 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이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2011. 4. 28.자 이사회에서는 통폐합된 대학교의 명칭을 가천대학교

2) 가천대학교, 경원대학교, 가천경원대학교, 경원가천대학교 중 택1

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었고, 이사정수 13명 중 참석이사 13명 전원의 찬성으로 위 통합안이 가결되었습니다.

3. 원고들의 문서제출요청에 관하여

가. 교명변경과 관련한 동의서의 제출에 관하여

원고들은 통폐합된 대학교의 교명에 대한 교수, 직원, 재학생, 동문의 동의서(을나 제4호증에 반영된 것)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가인으로서의 교명변경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고 그 내용을 가감하지 않고 을나 제4호증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동의서를 재판부에 제시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교명변경에 대한 동의서 사본을 원고들에게 교부할 경우 교명변경에 동의한 자(교수, 직원, 학생, 동문)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참가인은 재판부 및 원고들 소송대리인에게 위 동의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통폐합승인 신청서 제출에 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이 피고에게 통폐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후 몇 차례 수

정본을 제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참가인이 임의로 신청서 내용을 변경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초의 신청서, 수정본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 제2호증 중 제2쪽 심사추진경과 항목에 기재된 바와 같이, 참가인은 2011. 4. 29. 통폐합승인 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제1심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2011. 5. 30. 수정본을 제출하였고, 이후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현지실사(2011. 5. 31.)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본(을나 제2호증)을 2011. 6. 9.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신청서 수정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당초 신청서에 잘못 기재된 문구 등에 대하여도 함께 수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초 신청서와 이후 수정본 사이의 변동 사항을 항목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최초 신청서와 수정본의 분량이 상당히 많은 반면, 수정된 부분은 많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수정된 부분만 발췌하여 을나 제8호증으로 제출합니다).

- ① II. 대학일반현황 [경원대학교] 중 9. 특성화 추진 실적 및 계획 부분
특성화 분야의 선정 원칙, 선정 과정, 선정 평가지표, 특성화 추진실적, 연차별 평가지표를 추가하였습니다.
- ② IV. 대학 통폐합 목적 및 기대효과 중 4. 통합대학교 발전전략 부분
이 중 '수요자 중심 교육체계혁신' 부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

습니다.

- ③ IV. 대학 통폐합 목적 및 기대효과 중 5. 통합대학교 특성화 계획 부분
특성화분야 산정 기준을 구체화하였습니다.

- ④ V. 통폐합에 따른 2012학년도 입학정원 조정계획

최초 신청서에서는 '계열별 기준'으로 대학별 세부조정 내역을 작성하였으나, 피고의 요청에 따라 '단과대학별 기준'으로 대학별 세부조정 내역을 추가하였습니다.

- ⑤ VII. 통폐합 후 교육여건 개선 내용 중 3. 폐지되는 대학의 재학생 및
교직원 조치계획 부분

위 조치계획의 원칙(충분한 의견청취 및 반영)을 추가하였고, 인천캠퍼스 학생이 2015.2월 이후 학업연장자 또는 복학생이 발생할 경우 조치사항, 교류신청학점 확대운영 및 사이버교과목 증설, 유사학과로의 특별전과 허용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 ⑥ VII. 통폐합 후 교육여건 개선 내용 중 동문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부분

- 최초 신청서에서는 가천의과학대학교 총동문회장 및 임원 6명(총 7명)이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이후 2명의 임원이 동의서를 추가 작성하였기에 이를 반영하여 총 9명이 찬성(비율 100%)한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최초 신청서에서는 경원대학교 총동문회 임원 15명이 동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나중에 확인한 결과 총동문회 임원은 총 26명이고 이 중 11명이 동의서를 작성한 것이 밝혀져 총 26명 중 11명(비율 42.3%)이 찬성한 것으로 그 내용을 정정하였습니다. 다만 경원대학교 총동문회의 경우 위와 같이 동의자 수가 정정되어 동의율이 낮아지게 되었는바, 이는 참가인이 동의율을 임의로 높이기 위하여 신청서를 수정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 ⑦ VII. 통폐합 후 교육여건 개선 내용 중 동문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부분 가천의과학대학교의 대학평의원회의 총원, 참석인원, 서명인원이 각각 11명입니다. 그런데 최초 신청서에서는 통합안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심의결과 부분에서 이를 각각 6명으로 잘못 기재하였기에, 이 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³⁾

3. 결론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이나 입증이 없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합니다.

3) 통폐합승인 신청서(을나 제2호증) 중 제93쪽 맨 위쪽에서는 “가천의과학대학교 : 통합(안)에 대한 대학평의원회 심의 결과 재적인원 6명 중 전원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신청서 수정시 그 아래에 있는 표에서만 인원수를 6명에서 11명으로 정정하고 위 부분에 대한 정정을 실수로 누락한 것입니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통폐합승인 처분에는 어떠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 | | |
|------------|---------------------------------|
| 1. 을나 제6호증 | 이사회 회의결과조서(2011. 12. 26.자) |
| 1. 을나 제7호증 | 학교법인 가천학원 정관변경인가(2012. 1. 30.자) |
| 1. 을나 제8호증 | 통폐합승인 신청서 수정제출본 발췌 |